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범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803 발의연월일: 2025. 4. 14.

발 의 자: 박범계 • 박지원 • 추미애

김승원 · 정준호 · 김남근

신정훈 • 이정문 • 정을호

정성호 • 부승찬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대사회에서 기업,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,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특히,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,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, 현실적으로는 문서 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,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,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(간접점유 포함)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,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

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'증거의 편재'를 완화하고자 함 (안 제344조 등).

주요내용

- 가.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(간접점유 포함)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(안 제344조).
- 나.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, 관리, 보관 여부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고,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(안 제347조).
- 다.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,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(안 제347조의 3).
- 라.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(안 제347조의6).
- 마.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있음(안 제349조).

법률 제 호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제344조(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)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(간접점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절에서 같다)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침해되 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 등 자료 료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
 - 2.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
 - 3.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
 - 4.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

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

- 5.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로 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
- 6.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추출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
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 부하지 못한다.
- 1.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때
- 2.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

제345조의 제목 "(문서제출신청의 방식)"을 "(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)"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서제출신청"을 "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"문서"를 각각 "문서 등 자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
- 5. 문서 등 자료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

제346조의 제목 "(문서목록의 제출)"을 "(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)" 로 하고, 같은 조 중 "문서의"를 "문서 등 자료의"로, "문서로"를 "문 서 등 자료로"로, "가지고 있는 문서"를 "점유, 관리,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"로, "문서에"를 "문서 등 자료에"로 한다.

제3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, 관리, 보관 여부,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상 대방 당사자,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신문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 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.
-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 3장제6절의 규정을,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- ④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.
- 1.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
- 2.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상대방 당사자,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서 등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.
-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7조의2(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)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

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당사자가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- 제347조의3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제344조,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 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 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

- 3.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.
-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한다.
- 제347조의4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)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.
 -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 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한다.
 -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

- 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의신청에 관한 법 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.
-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347조의5(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, 열람제한 등)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.
 -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, 재판서·조서의 정본·등본·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.
 -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·등본·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 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, 송달,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

하여야 한다.

- 제347조의6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점유, 관리, 보관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348조의 제목 "(불복신청)"을 "(이의신청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문서제출의"를 "문서 등 자료제출"로, "즉시항고를"을 "이의신청을"로 하며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. 제349조의 제목 "(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)"를 "(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하다.

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- 1.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 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
- 2.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

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

- 3. 패소판결
- 4.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
- 5. 위반자에 대하여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제350조의 제목 "(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)"를 "(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)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,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·은 닉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 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 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351조의 제목 "(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)"를 "(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)"로 하고, 같은 조 중 "제347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"을 "제347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"로, "아니한"을 "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"으로 한다.

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1조의2(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·방어방법의 각하)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. 다만,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 록을 제출할 경우
- 2.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

제366조제2항 전단 중 "20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혀 행

제344조(문서의 제출의무) ① 다음 가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.

- 1.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
- 2.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
- 3.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,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. 다만, 다음 각목의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가.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

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

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

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

 한 문서

개 정 안

제344조(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 무)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(간 접점유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절 에서 같다), 관리, 보관하는 사 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 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로 서 제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 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 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 서 등 자료
- 2.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 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 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

- 나.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
- 다.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
-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 (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 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 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 외한다)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. 1.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
- 2.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

- 3.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보관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
- 4.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 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
- 5.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 등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자료
- 6.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 나 추출하는 데 과도한 비용 이 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
-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.
- 1.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

- 제345조(문서제출신청의 방식) 문 서제출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밝혀야 한다.
 - 1. 문서의 표시
 - 2. 문서의 취지
 - 3. 문서를 가진 사람
 - 4. (생략)
 - 5.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
- 제346조(문서목록의 제출) 제345 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, 법원은 신 청대상이 되는 <u>문서의</u> 취지나 그 <u>문서로</u> 증명할 사실을 개괄 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,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<u>가지고 있는</u>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

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 관하는 때

- 2.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
- 제345조(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)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--
 - 1. 문서 등 자료-----
 - 2. 문서 등 자료-----
 - 3.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사람
 - 4. (현행과 같음)
- 5. 문서 등 자료와 증명할 사실 <u>과의 관련성</u>

제346조(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

----- 문서 등 자료의

--- 문서 등 자료로 ------

----- <u>점유, 관리, 보</u> 관하는 문서 등 자료 -----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 록 명할 수 있다.

대한 재판) ① 법원은 문서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 출을 명하여야 한다.

----- 문서 등 자료에

제347조(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제347조(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) ①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 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.

>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 유, 관리, 보관 여부,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,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 을 신문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 방 당사자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

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한다.

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.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.

<u>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</u> <u>아니하다.</u>

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 2편제3장제6절의 규정을, 상대 방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신 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.

④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- 1.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보관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
- 2.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 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하는지에 관하여 의 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
- 3. 상대방 당사자,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 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

<신 설>

<신 설>

- 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 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
- 4.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
 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
 서 등 자료를 점유, 관리, 보관
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 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 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.
-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제347조의2(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)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된 문서

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기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 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 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 복할 수 없다.

제347조의3(비밀유지명령) ① 법원은 제344조,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(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),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,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

- 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반 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 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명령(이하 "비 밀유지명령"이라 한다)의 신청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- 1.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
- 2.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 하기에 충분한 사실
- 3.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 실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-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.
-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.

제347조의4(비밀유지명령의 취소)

-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(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 명령을 한 법원)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수 있다.
-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 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다.
-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-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다. 이의신청에 관 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 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.
-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 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 다.
-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 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 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 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 실을 알려야 한다.
- 제347조의5(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, 열람제한 등)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 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 야 한다.
 -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 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 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

서・조서의정본・등본・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.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

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, 재판

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·등본·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있다.

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, 송달,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347조의6(비밀유지명령 위반죄)
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
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
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
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

<신 설>

제348조(불복신청) 문서제출의 신 제348조(이의신청) 문서 등 자료 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 시항고를 할 수 있다. <후단 신 설>

제349조(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 지 아니한 때의 효과)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점유, 관리, 보관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제출-----이 <u>의신청을</u>-----. <u>이의신청</u> 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.

제349조(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) 당 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 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 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 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 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- 1.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 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
- 2.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 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 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

<u><신</u> 설> <신 설>

<u><신 설></u>

제350조(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)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 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때에는,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

- 3. 패소판결
- 4.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
- 5. 위반자에 대하여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제350조(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)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, 그 당사자는 그 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 ・은닉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 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 거나 전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

제351조(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) 제3자가 제3 47조제1항·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<신 설>

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351조(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) -------제347조제4항부터 제 6항까지의----아 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-----. 제351조의2(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을 위반한 공격·방어방법의 각 하)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 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 등 자료 목록 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공 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. 다만, 뒤늦게 제 출된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1.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
- 2.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

제366조(검증의 절차 등) ① (생략)

②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 료에 처한다. 이 결정에 대하여 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
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
출할 경우
제366조(검증의 절차 등) ① (현행
과 같음)
2
<u>500만원</u>
③ (형행과 간음)